"일터에 안심, 생활에 안정,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"

근 로 복 지 공 단

수신자 산재보험 의료기관장
(경유)
제목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

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7호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관련입니다.

2.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변경되어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변경 전(~'23년)			변경 후('24년~)			비고
	건강보험	산재보험		건강보험	산재보험		
		추가	최종가산		추가	최종가산	
상급종합	30%	15%	45%	15%	15%	30%	'24년 이전 · 이후 진료비는 반드시 분리청구 바람
종합병원	25%	12%	37%	10%	12%	22%	
병 원	20%	1%	21%	5%	1%	6%	
의 원	15%	-	15%	0%	-	0%	

끝.

근로복지공단이사장

수신자

대리	차장	재활계획부장	사회복귀지원국장
신상희	김미경	김영삼	전결 11/14 정숙향

협조자
시행 재활계획부-3692 (2023.11.14.) 접수
우 44428 울산 중구 종가로 340(교동) 근로복지공단 8층 /
전화 0527047566 전송 0505-065-2230 / winter@comwel.or.kr / 대국민 공개